



【훈 령】

- 정선군 훈령 제401호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신규임용을위한검정규정 폐지규정..... 1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2-43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부분 해제고시..... 4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2-358호 2012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시행 공고..... 5
- 정선군공고 제2012-359호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정선군공고 제2012-360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4
- 정선군공고 제2012-375호 정선군 지방상수도 사업 위탁 운영 공고..... 23
- 정선군공고 제2012-378호 2012년도 재가 진폐자 일자리조성 지원사업 공고 24
- 정선군공고 제2012-280호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34
- 정선군공고 제2012-381호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42

훈 령

정선군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신규임용을위한검정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2년 5월 16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훈령 제401호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신규임용을위한검정규정 폐지규정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신규임용을위한검정규정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신규임용을위한검정규정

제정(1984. 01. 27 훈령 제19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검정방법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을 위한 검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검정방법에 의한다.

제3조(검정시기 및 방법) ①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의 결원인원 및 결원예상 인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검정을 실시한다.

② 검정은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은 업무수행 능력을 면접시험은 일반소양을 위주로 검정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 면접시험을 행한다.

③ 단순노무직에 임용될 고용직 임용대상자에게는 제2항의 시험을 면제하고 임용권자가 우선 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노무직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사환
2. 관공
3. 잡무수
4. 사역수
5. 전달수

제4조(응시자격의 제한) 임용권자는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이외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는 임용예정 직명의 필요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시험과목 및 범위) ① 필기시험의 과목 및 출제범위는 임용예정 직명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출제범위는 공무원으로서 근무에 필요한 일반소양을 검정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합격자의 결정)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6할이상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150%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7조(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임용권자는 직명별 합격자에 대해 시험점수를 근거로 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 관리한다.

제8조(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9조(임용방법) 임용권자는 임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후보자 명부순위에 의하여 임용을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정 1984.01.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2-43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부분 해제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부분해제 고시합니다.

- 아 래 -

지구명	위 치	해 제 내 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자)
		유형	등급	면적(m ²)		
사북12리 (소잡느골)지구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348-1	붕괴위험	가	659m ²	사북읍 자율방범대 신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2005.12.08

붙 임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부분 해제 도면 1부(따로 붙임)

2012년 05월 07일

정 선 군 수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2-358호

2012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시행 공고

솔잎혹파리 피해임지 피해도 “중” 이상의 산림에 대하여 2012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를 시행하고자 사업추진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산림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후 우리군에서 방제사업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12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2. 사업기간 : 2012. 5. ~ 7. 20
3. 사업내용 :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포스파미돈)
4. 공고기간 : 2012. 5. 2 ~ 2012. 5.22(20일간)
5. 기타사항
 - 위 기간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 추진을 승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자에게 대행하여 실행함.
 - 본 공고에 이의가있을 경우 공고기간내에 우리군 산림정책과 전화(033-560-2425)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바랍니다.
6. 사업대상지 내역 : 붙임 참조

붙 임 : 2012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대상지 내역 1부. (상세내역은 홈페이지 참조)

2012년 5월 2일

정 선 군 수

2012년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대상지 내역 (총괄)

읍면별	리	필지수	대 상 면 적(ha)		비 고
			지 적	대상면적	
여량	여량	52필지	128.54	90.10	
	유천	99필지	260.20	196.40	
북평	나전	5필지	61.60	48.60	
	남평	92필지	262.52	232.39	
	문곡	12필지	53.84	48.00	
	북평	84필지	189.48	169.01	
	숙암	14필지	23.04	21.50	
	장열	65필지	101.88	94.00	
계		423필지	1,081.10	900.00	

정선군 공고 제2012-359호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정 선 군 수

1.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3조의2 에 의거 보조금의 반환사유 발생시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보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제명의 띄어쓰기
- 용어의 변경 제2조, 제2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같은 조 제3호, 제17조
- 제18조(보조금의 반환), 제19조(강제징수), 제20조(준용), 제21조(시행규칙)를 신설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우편번호 233-804)

- FAX 제출 : 033-560-2592

- 문의전화 : 033-560-2220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보조금”이라함은”을 ““보조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함은”을 ““보조사업”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자”라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을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할 보조금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결정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해당 보조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강제징수)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할 보조사업자나 보조금 수령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u>	<u>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u>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u>	제2조(용어의 정의) ----- <u>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보조금”이라함은</u>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1. <u>“보조금”이란</u> ----- ----- ----- ----- -----.
2. <u>“보조사업”이라함은</u>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2. <u>“보조사업”이란</u> ----- -----.
3. <u>“보조사업자”라함은</u>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u>“보조사업자”란</u> ----- -----.
제4조(보조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u>다음 각호에</u>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의 결정) ----- ----- ----- <u>다음 각 호에</u> 열거하는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u>다음 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④ (생략)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제33조 (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제33조의2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생략)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정선군 공고 제2012-360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정 선 군 수

1.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 개정이유

- 가. 현재 기금설치조례는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목표로 2003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을 군비를 출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 나. 2012년도 까지 기금이 95억원이 조성되고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 다. 여건에 따라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함.

3. 개정 주요골자

- 가. 기금조성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고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조성할 수 있으며,
- 나. 기금지원 대상자 및 대상사업 확대 시행 (안 제2조, 안 제6조)
 - 1) 생산자단체, 농업재해 복구사업, 농축산물가격안정자금, 등 기금 원금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사업 확대
 - 2) 기금 운영수익금 보조사업 삭제
 - 3) 농축산물의 과잉생산 및 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농축산물 일시매입 자금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

다.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3조)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존속기한을 5년 조문 신설

라. 기금 위탁관리 규정 개정(안 제5조)

- 1)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제6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 농·축협에 위탁하여 계속운용
-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규정삽입

마. 기금지원액 및 조건 완화(안 제7조)

- 1) 농안기금 사업당 지원 한도액을 사업비의 50%에서 80% 완화
- 2) 농업인은 5천만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은 1억원의 한도내로 지원(현재 농업인 2천만원, 농업단체 5천만원 이내 지원)
- 3)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현재 1년거치 2년균분상환)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4) 융자기관이 정한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총 연체 이자액은 융자금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바. 중복융자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제4항)

- 1) 농안기금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 받을 수 없음.

사. 기금의 회수사유에 기금을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 또는

전출하였을 때를 신설.(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에게 서면으로 우편 또는 Fax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2) 성명 (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 4) 제출 및 문의전화
 - 우편제출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농업축산과 (우편번호 233-804)
 - FAX 제출 : 033-560-2599
 - 문의전화 : 033-560-2376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농업·농촌발전에 대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4. “작목반”이란 농축산물의 공동생산과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협동조합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지역명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 중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선정된 생산품을 말한다.
6.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피해를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9.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이란 농축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구성 및 존속기한) ①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4. 그 밖의 출연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영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11조 및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내 용자기관인 농·축협과 협약체결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정선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원,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 주소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 법인 및 작목반으로 한다.
 ②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업인 및 농업법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2. 지역특화육성 사업
 3. 지역명품 사업
 4.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농축산물 일시매입 자금)
 5.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농업재해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지원 및 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업 지원조건 및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사업당 지원한도액은 사업비의 80% 이내로 하며, 농업인은 5천만원, 농업법인 및 작목반인 경우는 최고 1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한다.
 2. 기금을 지급함에 있어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융자금의 이율은 연 2%로 고정금리로 한다.
 4.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다만,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지원 사업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한다.
 5.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이 정한 연체이자율 가산하되, 총 연체 이자액은 융자금의 40%를 초과하여 부과 할 수 없다.

제13조(기금의 신청)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적정하게 대상자 및 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③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4조(사업대상선정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지원대상자(농업법인 및 작목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결정 사실과 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회수)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였을 때
3. 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기금을 받은 자가 군 외 지역으로 이주 및 전출 하였을 때

제16조(기금반환 통보) 제15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위탁 금융기관에서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고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기금 대출시 시중금리로 계산하여 원금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농업축산과장
2. 기금출납원: 농정기획담당

제19조(기금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정선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생 략)

3. ~ 4. (생 략)

-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7. ~ 11. (생략)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말한다.
- 2. "농업재해"란 한해(旱害), 수해, 풍해(風害), 냉해(冷害), 우박, 서리, 조해(潮害), 설해(雪害), 동해(凍害), 폭염(暴炎), 병충해(病蟲害),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3. ~ 13. (생략)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정선군 공고 제2012-375호

정선군 지방상수도 사업 위탁 운영 공고

정선군 지방상수도를 위탁·운영하고자 수탁기관(한국환경공단)과 다음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수도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5월 09일
정 선 군 수

【 위 탁 개 요 】

- 가. 위탁목적 : 정선군 지방상수도 사업의 운영 효율화를 위함
- 나. 위탁범위 : 지방상수도시설 확장 및 운영·관리, 시설개선, 고객 및 요금관리 등 전반
- 다. 위탁기간 : 2012. 7. 1 ~ 2032. 6. 30 (20년)
- 라. 위탁대가 : 125,214백만원 (불변)

(단위:백만원)

구 분	총 위탁대가 (20년)			평균 위탁대가 (1년)			비 고
	계	운영대가	시설대가	계	운영대가	시설대가	
불 변	125,214	86,535	38,679	6,260	4,326	1,934	

- 마. 비용조달 : 정선군 지방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급수수익
- 바. 위탁기관 : 정선군수
- 사. 수탁기관 : 한국환경공단
- 아. 법적근거 : 수도법 제23조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정선군 공고 제2012-378호

2012년도 재가 진폐자 일자리조성 지원사업 공고

2012년도 재가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사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5. .

정 선 군 수

1. 사업 목적

- 과거 채탄 막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중 일부는 진폐증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사업 기본 방향

- 재가 진폐자를 고용하는 법인 및 진폐자 단체의 근로성 일자리 조성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
- 정부(산하 공공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가 진폐자 지원사업과 중복 배제

3. 사업 예산 : 400백만원 (고용보조금 200백만원, 사업개발지원 200백만원)

4. 사업 기간 : 2012. 6월 ~ 2012. 12월

5. 응모자격

5-1 강원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한 시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재가 진폐자를 1명이상 상시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5-2 강원도내 폐광지역진흥지구 소재한 시군의 진폐재해자 단체 및 진폐재해자로 구성된 공동체

6. 지원대상 사업내역

사업내용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대상	비고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신청인원 1인당 7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 신청인원 : 2012년 재가진폐자 고용인원 · 지원한도 : 1개 기업당 10명이내 · 고용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 단위	가	· 사업신청자 미달 또는 사업내용별 집행잔액 발생 예정시에는

사업내용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대상	비 고
	(예산액: 200백만원)	또는 일시에 지원금 사후지급 · 고용주는 1년이상 고용유지의무 및 신청인원 고용보험 가입 * 고용유지의무 위반시 잔여 지원금 중단 및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		총예산 한도내에서 사업내용별 예산액을 상호 증감 조정 가능
사업개발 지원 (부지· 건물 임차료 및 시설비)	1. 신규사업 : 사업장당 50백만원 이내 2. 추가지원 : 1 회에 한하여 사업장당 30 백만원 이내	· 지원업종 : 식품가공업, 영농업, 서비스업 · 신규사업 : 부지·토지 임차료 및 시설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합산하여 5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일자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설확장 및 가공시설 설치 분야에만 1회에 한하여 30백만원 한도 지원가능. · 증빙자료를 기초로 지원금 사후지급 *시설비 : 기계류 구입비, 영농시설비, 사업에 필요한 자재비	나	

7. 제출서류

사업내용	신청서류	지원대상 선정후 제출서류	비 고
재가진폐자 고용보조금 지원	· 신청서 · 고용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유지의무 이행각서 · 신청업체 현황	· 고용내역서 · 진폐등급서류 · 근로계약서사본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사업개발 지원(신규) (사업부지· 건물 임차료 및 시설비)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신청업체 또는 단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차료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송금내역 등) · 공사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 시설비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사업개발 추가지원 (시설확장 및 가공시설 설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사업추진현황 포함) · 신청업체 또는 단체 현황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차료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송금내역 등) · 공사계약서 또는 구매계약서 · 시설비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등) ·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증빙자료 추가 요구 가능

8.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 심사기준
 - (1) 기금의 사용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적정성
 - (2) 금액산정의 적정성 및 자부담에 대한 능력
 - (3)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등
- 선정결과 : 개별통보

9. 사업 추진 체계

도 <관광지역개발과>	시·군 <사업주관부서>	법인 및 단체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서 심사 및 선정 ▪ 시·군 사업예산 내시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설명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진달 ▪ 지원선정사업 보조금 지급 ▪ 사업수행 지원 및 사후 관리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신청 ▪ 지원선정된 사업 시행 ▪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신청서류 제출

10. 신청 안내

- 신청서 제출기한 : 2012. 5. 21(월)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 신청서류 제출처 : 정선군 지역경제과
 - 주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우 233-701)
 - 담당자 : 이정원 (TEL : 560-2356, FAX : 560-2594)

11. 기타사항

- 사업비 집행방법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름
-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단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되며 보조금을 환수합니다.
- 사업내용 이나 사업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법인 및 단체는 향후 지원이 불가합니다.

【붙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서식)

신 청 서

서식 1

사 업 내 용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고 용 인 원	예시) ○명 (2012년 1분기: ○명, 2분기 ○명)		
근 로 분 야	예시) 생산직, 사무직, 환경미화 등		
사 업 장 소	예시) ○○시 ○○읍 ○○리 ○○번지		
지 원 요 구 액	산출기초	○명×70만원×6개월	
신 청 업 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FAX
	법인번호	업 종	
	설 립 일	종업원	명

위와 같이 재가 진폐자 일자리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 . .

신청단체명 : (직인)

제출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 구비서류

1. 고용계획서 1부
2. 신청업체 현황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비영리법인허가증사본) 1부.
4. 고용유지의무 이행각서 1부.

정선군수 귀하

고 용 계 획 서

서식 2

1. 기업체 연혁

2. 신규직원 고용계획

고용 예정월	고용인원수	근무부서 및 채용 내역
○○년 ○월		
○월		
계	명	

※ 고용조건 :

3.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액

- 지원신청액 :
- 산출기초 : 고용예정인원 ○명 × 50만원 × 6개월

4. 기대효과

고용유지의무 이행각서

서식 3

○○주식회사는 재가 진폐자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유사보조금을 수급하지 아니하겠으며, 고용보조금 지원조건에 따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고용의무

- 고용유지대상 : 2012년 중 고용한 재가 진폐재해자
- 고용유지기간 : 고용일로부터 1년 이상
- 고용유지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

년 월 일

주소 :
 상호 : (법인인감)
 대표자 : (서명)

※법인인감증명 : 별첨

정선군수 귀하

신 청 서

서식 4

사 업 내 용	사업개발 지원 (사업부지·건물 임차료, 시설비 중 택)				
사 업 명	예시) 특용작물 재배 및 판매, 두부제조 판매 등				
사 업 기 간	예시) 2012. 6. 1 ~ 2012. 12. 31				
사 업 장 소	예시) ○○시 ○○읍 ○○리 ○○번지				
소 요 예 산	총사업비 ①+②		지원요구액 ③		자체예산 ④
신 청 단 체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FAX	
	설립목적				
	단체현황	창립연도 : 년	총인원 :	명(직원수 명, 회원수 명)	

위와 같이 재가 진폐자 일자리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 . .

신청단체명 : (직인)

제출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단체 현황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비영리법인허가증사본) 1부.

정선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서식 5

1. 사업계획

사업목적

작성예시) 사업목적을 간략히 기재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작성예시) 총사업비○○백만원 / 지원신청액○○백만원 / 자부담액○○백만원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작성예시) 사업명, 사업량 또는 사업규모, 작업방법, 참여인원수, 생산물의 처리방법

2. 사업 수익금 처리방법

작성예시) 사업수익금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 건지(배분 또는 재투자 등)

3.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사항

작성예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강원랜드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부터 협력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

4. 추진일정

※ 사업관련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5. 기대효과

추 가 지 원 신 청 서

서식 6

사 업 내 용	사업개발 지원 (사업부지·건물 임차료, 시설비 중 택)				
사 업 명	예시) 특용작물 재배 및 판매, 두부제조 판매 등				
사 업 기 간	예시) 2012. 6. 1 ~ 2012. 12. 31				
사 업 장 소	예시) ○○시 ○○읍 ○○리 ○○번지				
소 요 예 산	총사업비 ①+②		지원요구 액①		자체예산 ②
신 청 단 체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FAX	
	설립목적				
	단체현황	창립연도 :	년	총인원 :	명(직원수 명, 회원수 명)

위와 같이 재가 진폐자 일자리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 . .

신청단체명 : (직인)

제출자(대표자) : (날인 또는 서명)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단체 현황 1부
3. 사업자등록증사본(또는 비영리법인허가증사본) 1부.

정선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서식 7

1. 사업추진상황

사업 추진상황

작성예시) 신청일 기준 2011년 사업추진 상황을 상세히 기재(시설설치 및 운영사항 등)

고용인력 및 효과

작성예시) 2011년 사업 추진에 따라 고용한 인력과 수입 등 효과를 상세히 기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작성예시) 사업명, 사업량 또는 사업규모, 작업방법, 참여인원수, 생산물의 처리방법

2. 사업계획(추가지원)

사업필요성(추가지원)

작성예시) 추가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을 상세히 기재

사업기간

소요사업비

작성예시) 총사업비○○백만원 / 지원신청액○○백만원 / 자부담액○○백만원

사업내용 및 기 추진 사업과의 연계방법

작성예시) 사업량 또는 사업규모, 작업방법, 및 '11년도 추진사업과의 연계방법을 상세히 기재

2. 사업 수익금 처리방법

작성예시) 사업수익금 발생시 어떻게 처리할 건지(배분 또는 재투자 등)

3.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사항

작성예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기초지방자치단체, 강원랜드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부터 협력 받을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

4. 추진일정

※ 사업관련 세부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5. 기대효과

※ 추가지원을 통한 기존사업과 연계로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 제시

정선군 공고 제2012-280호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정 선 군 수

1. 조 례 명 :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2. 개정취지

-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05.23)으로 폐지

3. 주요내용

-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FAX 56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560-2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참고사항

붙 임 1.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관련법령 발췌 1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별표1중 “기능직·고용직” 을 “기능직” 으로 한다.

정선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제정(1982. 01. 06 조례 제0692호)
- 개정(1983. 01. 17 조례 제0830호)
- 개정(1983. 12. 29 조례 제0864호)
- 개정(1984. 08. 01 조례 제0945호)
- 개정(1985. 01. 28 조례 제0970호)
- 개정(1985. 10. 20 조례 제1005호)
- 개정(1989. 02. 20 조례 제1204호)
- 개정(1989. 05. 10 조례 제1221호)
- 개정(1996. 06. 24 조례 제1658호)
- 개정(1999. 01. 18 조례 제1750호)

제1조 (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3항제4호호에 규정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 공무원 및 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 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 을 말한다.

제3조 (신규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임용구비 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전보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은 임용권자 단위기간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경우 전보 임 용원칙 및 전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 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권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시군 소속 기관 내에 전출 또는 전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 하여 당해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84.08.01>

제4조의2 <삭제 1996.06.24>

제5조 (근무상한 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전문개정 1983.03.17>

③임용권자는 별표의 근무상한 연령이 55세이하인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당해 고용직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고용직공무원의 담당직무의 특수성, 직무 수행능력 및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85.01.28>

제6조 (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개정 1983.01.17>

제7조 (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때
-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된 때
- 3. 천재지변 또는 전지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8조 (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01.18 조례 제1750호>

-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의2 (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신설 1999.01.18 조례제1750호>

제8조의3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공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신설 1999.01.18 조례제1750호>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9.01.18 조례제1750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

직기간으로 본다.<신설 1999.01.18 조례제1750호>

제9조 (병역 복무휴직자의 결원보충) ①고용직공무원이 제8조제1호호의 사유로 6월이 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사업소 및 산하기관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 정원 관리단위"라 한다) 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군수가 조정임용 할 수 있다.

③제1하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 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①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행한다.

②공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징계 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5. 10. 2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지방고용원(휴직중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감봉처분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감봉처분에 있는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폐지규칙) 정선군지방고용원규칙(규칙 제332호 1980.01.29)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8.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명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2종 잡무수는 2종 보조수(2종 잡무수 중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2종 사역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85.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대상자 및 신규임용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조례 별표에서 신설 규정한 "방법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당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서 재직중인 방법대원에 한하여 신규 인용하고 이 경우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89.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명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으로서 직명이 폐지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6.0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방법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12월31일인 자와 1999년6월30일인 자는 1999년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별표] <개정 1989.05.10, 1996.06.24, 1999.01.18>

지방고용직공무원의직종·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

구 분	1종	경노무
직 명	지도원	사 환
근무상한연령	57세	57세

비고 : 지도원은 조례 제1658호(1996년 6월 24일 공포)시행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친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3.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와의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11.8.24] 제2조

※ 제2조제3항제4호 : 고용직공무원 삭제

정선군 공고 제2012-381호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11일

정 선 군 수

1. 제안이유

-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설정 (안 제5조)
-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및 주기 설정 (안 제6조 및 제7조)
-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안 제8조)
-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안 제13조)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안 제17조)

3. 의견제출

-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고 : 정선군상하수도사업소, 주소: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전화:033-560-2338, FAX:033-560-2940)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지하수의 부존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4조(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 또는 수질오염 등 영 제7조의2제3항의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정선군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 및 제7조의2의 절차에 의한다.

제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퍼센트
-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5퍼센트.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7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3년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 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6년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항
-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2. 군 소속 공무원
-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사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영 제12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3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선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세입) ①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
2.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제16조(관리자의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두되,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톤)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퍼센트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부담금 산정은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 또는 시간계를 기초로 산정한다.

⑤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년

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직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 또는 시간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8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선군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5-2호서식의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고지서에는 이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종료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납부고지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부담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써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한 날부터 최근 1년 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text{누수량} = (\text{누수기간 중 월 사용량} - \text{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 사용량}) \div 2$$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가산금 등)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

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부담금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말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르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특별회계 설치 경과조치) 제13조에 따른 지하수특별회계 설치에 국·도비 지원 등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설치를 유예하고 우선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운영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생 년 월 일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24조제1항 관련)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시행 :

수신 :

제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에 따라 금○○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0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제24조제3항 관련)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금 (₩	원)	당초 납부기일	
<p>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 선 군 수 (인)</p>				

[별지 제5호서식] (제27조제2항 관련)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행 :

수신 : ○○법원장

발 신 : 정 선 군 수 (인)

제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 일자		이의제기 사유	

- 붙임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사본 1부

관 계 법 령 발 취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자료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기관 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면 미리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일 2011.12.1]]

제6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지하수의 수위저하(水位低下), 수질오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

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11.5.30.]]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2.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환경부령인 시행규칙에 수질검사 기간에 대한 조항이 없음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 삭제 [2009.4.30]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에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 2. 그 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20조(수질검사 등) ①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수질검사의 항목·기준·절차 및 검사전문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0조의2(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소속 1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학교에서 수리지질학·응용지질학·수문학·환경공학·경제학 또는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리지질·응용지질·수문·환경·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 5.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 7.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
- 8.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 9.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⑥ 시장·군수는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운용계획을 변경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3.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말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2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14. 제31조제1항에 따른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4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3. 제9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